

I

의용소방대 역사 및 제도



제1장 의용소방대 역사 및 제도

제2장 외국 의용소방대 역사 및 제도



학습개요

◆ 교육개요

- 의용소방대의 설치목적과 시대의 변천에 따른 역할을 조명하고 현재의 제도를 소개한다.
- 해외 각국의 의용소방대가 발생된 과정과 지역 사회에서의 역할을 소개한다.

◆ 학습목표

- 의용소방대의 설치목적과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제도의 내용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다.
- 외국의 의용소방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와 역할을 이해한다.

◆ 학습내용

- 의용소방대의 특성과 의의
- 우리나라 의용소방대의 역사와 발전
-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법령과 제도
- 외국 의용소방대의 특성

◆ 실습사항

- 일반 주민에게 의용소방대를 설명해보기(5분)
- 소방학교, 소방서 등에 전시된 옛날 소방기구 관람하기



의용소방대 역사 및 제도

제 1 장

1 의용소방대 의의

의용소방대는 관설 소방과 가장 가까운 협조단체로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읍·면에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하고, 대원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의용소방대의 조직은 관설 소방이 설치되기 이전부터 조직되어 화재의 진압뿐만 아니라 일제시대에는 경방단에 통합되어 소방활동을 해왔고, 정부수립 후 소방대는 전후 복구사업 및 국토재건에 참여하였으며, 한국전쟁을 겪는 과정에서 방공단에 편입되어 방호부, 구호부, 훈련부를 두고 방호부내 소방반을 설치하여 운영해 오다가 1953년 민병대 조직 시에는 생계에 종사하면서 군사훈련을 받아 향토방위에 협조하는 등 방공업무도 겸행하였다.

이렇듯 의용소방대의 역사는 소방의 원조이자 전신이며, 1925년 4월1일 최초의 경성소방서가 설치되기 이전까지의 의용소방대 활동은 광범위하고 적극적이었으며, 흔히 말하는 「의용봉공의 정신」이 정말로 투철했던 것은 지역단위의 활동이 왕성했던 그 당시가 아니었나 싶다.

소방의 양적, 질적 성장이 이루어진 지금은 관 소방에 밀려 조직력이나 운영 면에서 예전에 미치지 못하나 소방력이 부족한 읍·면 지역에서는 화재나 산불진압은 물론 재난 발생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도시에서는 소방홍보활동 기능과 행정지원 등 필요한 협조, 지원단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의용소방대를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다각적인 제도정비와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우리나라 의용소방대의 발전사

1) 구한말 이후 의용소방대 발전사

구한말 문호가 개방되면서 각 개항지에는 일본인 거류자의 수가 늘어나고 내왕이 잦아져 개항지에 거류하는 일본인의 재판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공사관과 영사관을 배치한 것이 한국내 영사 경찰제도의 효시이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후 1906년 2월 통감부를 설치하는 한편 각 개항지에는 영사관을 폐지하고 이사청(理事廳)을 개설하였으며 통감부에는 당초 총무부, 농산공부, 경무부를 두고 경무부 내의 보안과에서 거류민단 구역 내에서의 소방문제를 다루었다.

각 개항지에서는 거류민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용소방조를 설치하기 시작하였으며 경성의 경우 이사청령 제1호로 경성 소방조규칙 제정에 근거, 1889년 2월 소방펌프 1대를 비치하여 소방조를 설치한 것이 한국내 일본인 소방조의 효시이다.

이어 1890년대와 1900년대 초반까지 각 개항지 영사관규칙으로 소방조규칙이 제정 시행되었고 관민으로부터 각출금을 거두어 수압펌프를 구입하고 소방조원에게는 출동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원산은 1909년 1월 6일, 부산은 1909년 9월 25일, 평양은 1909년 11월 6일, 목포는 1909년 1월 15일 이사청령으로 소방조규칙을 제정 시행하였다.

결국, 소방조는 1910년 이전부터 일본인들이 일본인 거류지역 내에서 자신들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임의단체로 조직 운영하였으며, 영사관규칙 후의 이사청령으로 개정되어 소방조 규정 제정시행 시점인 1889년대에 비로소 공설조직으로 활동하기 시작, 한국인 사회에서도 한국인만으로 소방조가 조직되고 때로는 한·일 공동조직으로 소방조를 설치하였다.

이 같은 소방조직은 식민통치 하에서 더욱 확대되어 1914년말에는 전국적으로 635개소의 소방조가 조직되고 조원수는 56,567명이나 되었다.

그 후로 1915년 6월 소방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법규인 소방조규칙을 조선총독부령 제65호로 제정 공포하고 동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는데 여기에서 지역별로 상비소방수를 둘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보수와 복제가 특별히 지급되었다.

경찰관서의 상비 소방수 주재소외에 민간자치 소방조직인 소방조에서는 따로 상비 소방대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근거인 경무총감부령 제7호와 설치현황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경무총감부령 제7호(1912년 6월 28일)

- 제 1 조 경성소방서에 상비대를 둔다.
- 제 2 조 상비대의 인원은 20명으로 하고 경성소방조 소방수 중에서 경무총장이 임명한다.
- 제 3 조 경성소방조 상비대원은 임시 비번근무에 당하는 경우 외에는 격일로 교대 근무한다.
- 제 4 조 경성소방조 조두 소두는 수시로 상비대의 주재소를 순시한다.
- 제 5 조 경무총감부 보안과장은 경무총장의 명을 받아 경성소방조 상비대를 지휘 감독한다. 단, 출화에 있어서 보안과장이 출장하였을 때에는 보안과 소방계 경시가 지휘하고 만약 보안과장과 보안과 소방계 경시가 모두 출장하였을 때에는 화재지관할 경찰관서장이 지휘한다.
- 제 6 조 경성소방조 상비대의 복제는 경무총감부 상비소방수에 준한다. 단, 금의 우전단에 금색경자, 좌 전단에 민자의 금장을 붙인다.

2) 의용소방대 상비대원 제도

소방서에 근무하는 임시직 또는 고용원의 신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58년 소방법제 정시 의용소방대 유급상비대원 제도를 두었는데 당시 동법 제44조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으로서 소방상 필요에 의하여 소집된 때에는 출근하여 소방서장의 소방업무를 보조토록 하고, 필요할 때에는 유급상비대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동법 시행규정 제61조에서는 유급상비대원을 두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규정은 각 지역 실정에 따라 소방서에 근무하고 있는 잡급 또는 고용원에 대한 신분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였고 동 제도에 대한 발전적 조치는 아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충하기 위하여 1969년 4월 9일에는 시·군의 의용소방대원 보수지급 조례집 제안을 시달하여 의용소방대의 상비대원의 보수를 지방공무원 5급 을류 1호봉과 같이 하도록 하였고 후에는 지방 실정에 따라 지방소방공무원인 소방원과 같이 하고 매년 승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간 의용소방대 유급상비대원은 지방고용원 규정에 의한 소방수로 임명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보수의 차이로 실현하지 못하였고, 1975년 12월 31일 소방법 개정시 의용소방대 유급상비대원 제도를 폐지하고 의용소방대, 유급소방대, 유급대원 2,002명을 지방고용원 소방수로 임명하였다.

3) 50년대 후의 의용소방대 발전사

전후 혼란 속에서 화재가 빈번하여지자 1954년에 들어와서 의용소방대를 재구성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때에는 별도의 설치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종전의 예에 따랐다.

1958년 3월 11일 소방법 제정 시에는 동법에 의용소방대의 설치규정을 마련하였다. 민병대 조직이후 방공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이 방공법에서 정한 방공업무를 겸행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한 근로동원을 면제토록 하였다.

1970년 12월 31일 소방법 개정시에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던 중 민방위 본부가 발족된 후인 1975년 12월 29일 내무부에서 시·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준칙을 시달하였다. 관 소방의 유일한 보조민간조직으로서 소방서 미설치지역(읍·면)의 중요한 소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용소방대는 시·면에 두되 인구가 밀집한 시가지가 있는 면에서는 도지사의 승낙을 얻어 2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73년 2월 2일 소방법 개정시에는 종전에 원칙적으로 시·읍에서 설치토록 한 것을 시·읍·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의 명칭은 소재지 군, 읍, 면의 명칭을 위에 붙이고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제1, 제2, ..”의 순위를 붙이도록 하였다.

대원은 그 지역 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조직하되 군인, 군, 공무원과 학생, 직장방공단에 가입한 자는 제외하며 대에 대장 1인, 부대장,부장 및 반장 약간인을 두되 대장은 소방서장(또는 경찰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이외의 대원은 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소방서장(또는 경찰서장)이 임명하였다. 대의 정원은 그 소재지의 인구 3만까지는 60명, 3만을 초과할 때에는 매 1만마다 5명을 가산하고 면의 대에 있어서는 30명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러나 1976년부터는 의용소방대 설치 등에 관한 시·군 조례 시행을 계기로 종전과는 달라졌는데 변경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 또는 시·읍·면에 1개 대만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구역을 정하여 지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의 하부조직은 종전에는 총무부, 소방부, 구호부, 훈련부내에 8개 반을 두었던 것을 총무부, 방호부, 지도부내에 서무, 보급, 소방, 구호, 예방, 훈련의 6개 반으로 정비하였다.

대의 편성은 종전에는 인구를 기준으로 하던 것을 시·읍·면 별로 각각 50명 내지 30명으로 하고 지대는 20명으로 하였다. 대원의 임면도 대장은 도지사가, 대장이외의 대원은 소방서장 또는 경찰서장이 임면하던 것을 시장·군수가, 기타 대원은 소방서장 또는 읍·면장이 임면하도록 하였다.

정부수립 후 의용소방대는 소방업무뿐만이 아니라 전후 복구사업 등 정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활동을 벌여 왔으나, 1952년 8월에는 방공단규칙 제정을 계기로 소방대는 방공단에 흡수되었다. 1953년 7월에는 민병대를 조직해 됨으로써 방공단을 포함한 각종 청년단체가 해산되어 잠시 동안 민간자치 소방조직이 전무하였다. 그러나 의용소방대의 필요성이 재인식되어 1954년 1월에는 전국적으로 의용소방대를 재조직하기에 이르렀으며 1958년 소방법 제정시 소방법에 의용소방대 설치 규정을 마련한 것을 계기로 그 후 계속 발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의용소방대는 우여곡절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는데 여러 번 걸친 제도적 변천 속에서도 계속 존속하게 된 것은 아직까지 상비 소방조직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 는 점에도 기인하지만 이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여러 차례의 시련을 극복하여 오는 과정에서 터득한 지역의 재난문제는 주민 스스로가 해결하겠다는 자위정신의 발로라 하겠다.

3 의용소방대 제도

1) 의용소방대의 설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특별 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읍·면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의용소방대는 남성의용소방대와 여성의용소방대 또는 남성과 여성이 혼합된 혼성의용소방대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소방관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 의용소방대를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전담의용소방대로 운영할 수 있고, 지역특수성에 따라 전문기술·자격자 등으로 구성하는 전문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 의용소방대의 명칭

- 남성의용소방대 : ○○소방서 ○○남성의용소방대
- 여성의용소방대 : ○○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
- 혼성의용소방대 : ○○소방서 ○○의용소방대
- 지역의용소방대 : ○○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역대
- 전문의용소방대 : ○○소방서 ○○전문의용소방대
- 전담의용소방대 : ○○소방서 ○○전담의용소방대

2) 임명·해임 및 조직

(1)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의용소방대원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 관할구역 내에서 안정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 관련 자격·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 의사·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 기타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

(2)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2개 이상의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는 시 지역에 서는 대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기부금 모금, 영리목적으로 대의 명칭 사용, 정치활동 관여, 소송·분쟁·쟁의에 참여)
- 경비, 소집수당, 활동비 등 집행과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규정된 교육·훈련을 연 1/2이상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년 :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

(4) 조직

의용소방대에는 대장, 부대장, 부장, 반장 또는 대원을 두며, 대장 및 부대장은 의용소방대원 중 관할 소방서장의 추천에 따라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대장은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속 의용소방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의용소방대원을 지휘·감독한다.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대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의용소방대의 정원은 시·도와 시·읍은 60명 이내, 면 지역은 50명이내, 지역대와 전문의용소방대는 50명 이내로 한다.

(5) 임무

의용소방대의 주요 임무는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구조·구급업무의 보조, 화재 등 재난발생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및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임무로 한다.

3) 복무와 교육훈련

(1) 의용소방대원의 근무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2) 재난현장 출동

의용소방대원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에 따라 화재, 구조·구급 등 재난현장에 출동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이 없어도 긴급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의용소방대장은 임무수행 후 즉시 전담의용소방대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소방장비 등 무상대여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소방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소방용 통신시설
- 소방용 차량
- 화재진압장비, 구조구급장비 및 보호장비
- 그 밖의 집기 및 사무용품

(4) 행위의 금지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
- 영리목적으로 의용소방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 소송, 분쟁,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5)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6) 교육 및 훈련

의용소방대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의용소방대장은 소속 대원의 소방활동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자체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기본교육 : 의용소방대원 임명 후 2년 이내에 36시간 이상(신입대원)
- 전문교육 : 기본교육을 이수한 의용소방대원으로 연 12시간 이상(경력대원)
-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월 2시간 이상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실시

4) 경비 및 재해보상

(1) 경비의 부담

의용소방대의 운영 및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도지사가 부담하며 국가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법률에 정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소집수당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임무를 수행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소집수당은 지방소방위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성과중심의 보상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활동실적에 따라 운영경비를 지급하고 포상기회를 부여하는 등 성과 중심으로 보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4) 재해보상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법령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요양보상** : 대원이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치료·수술·약제·입원비 등을 지급
- **장애보상** : 대원이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등급별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2가지 이상의 신체장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되는 등급 적용)
- **장제보상** : 대원이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 **유족보상** : 대원이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 재해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

보상등급	보상금 결정 기준	
신체 등급별 장애 보상	요양보상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액 5년분
	장제보상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액 3월분
	유족보상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액 10년분
	제1급	유족보상금의 100/100
	제2급	유족보상금의 88/100
	제3급	유족보상금의 76/100
	제4급	유족보상금의 64/100
	제5급	유족보상금의 52/100
	제6급	유족보상금의 40/100
	제7급	유족보상금의 20/100
	제8급	유족보상금의 10/100
	제9급	유족보상금의 5/100



외국 의용소방대 역사 및 제도

제 2장

1 의용소방대의 유래

1) 고대 로마의 자위 소방대

“불은 인간에게 은혜를 주면서도 파괴적인 두 얼굴을 가진 신”이라고 믿었던 고대사회에서부터 조직적인 방화관리 활동이 시작되었다. B.C 300년경 고대로마에는 민간단체(Committee of Citizens)의 감독 하에 가족 공동체(The Family Public)라는 일종의 자위방위대가 조직되어 이들이 화재진압과 야간 방화순찰을 담당하였다. 이것이 고대사회 초기의 자위소방조직이다.

2) 노팅엄(Nottingham)시의 여성소방대

영국에서는 1830년까지만 해도 소방장비를 갖춘 공공 소방기관을 중앙정부에선 통할하지는 않았다. 블랙스톤(blackstone) 영국 소방역사(A History of the British Fire Service)에 의하면 영국에서는 1643년 내란(The British Civil War) 당시 노팅엄(Nottingham)시에서 50명의 여성소방대가 조직되어 야간에 시내를 순찰(patrol)하면서 자위소방활동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2 영국 의용소방대

런던 대화재(1666년) 이후 1668년까지 여러 개의 화재보험회사가 창설되어 각 보험회사에 소방대가 설치되었으나 보험가입대상물의 화재만 담당하였다.

1824년 에딘버러, 1828년에 맨체스터 등의 도시에 공설소방대가 조직되었으나 이것은 극

허 제한된 일부 지역의 공공건물 등에만 소방활동을 하였고, 일반 시민의 시설에 대하여는 의용소방대의 소방활동에 의존했다. 따라서 의용소방대가 점차로 확대되어 19세기 후반에는 영국 전역에 의용소방대가 보급되고 이를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을 지출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시체제에서는 각 지방의 자치단체별로 보조소방제도를 채택하여 여가를 이용한 훈련참가와 동시다발 화재에 대비하는 전시 소방체제였으나 1941년에 보조소방조직과 지방소방조직이 국가소방조직으로 통합되었다.

상근 소방대원 외에 현재에도 비상근 대원이 상당수 있지만 다른 국가의 의용소방대원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봉급과 출동수당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되며 훈련은 상근 소방대원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3 미국 의용소방대

자치와 봉사정신을 모토(motto)로 하는 미국 의용소방대의 시초는 화재와 범죄 및 불법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할 책임이 시민에게 있다는 자구책으로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야간 경비원 제도였다. 이 경비원 제도는 식민지시대 보스톤의 “Bell Men”제도라든지 뉴욕의 “Fire Wardens” 제도를 들 수 있다.

- “Bell Men” 제도 : 식민지시대의 미국에서는 주로 대도시 지역에서 야경 활동을 실시하였다. 1654년부터 보스턴 시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5시까지를 근무시간으로 하는 야간 방화순찰을 하였는데 순찰원들을 종치는 사람 즉, 어떤 위급한 일이 생길 때 종을 쳐서 동리에 알리는 야경(夜警)꾼 이라는 뜻에서 “Bell Men”이라고 불렸다.
- “Fire Wardens” 제도 : 1657년에 뉴욕 시는 자원봉사단(Volunteers)으로 구성된 화재감시자(Fire Wardens)를 운영해 왔는데 이들은 시의 소방업무를 대행했으며 딸랑이로 경보를 울리면서 야경을 돌았다. 그래서 이들을 “Rattle Watch”(딸랑이 야경꾼)라고 불렀다.

미국의 소방제도는 원칙적으로 연방정부는 연방정부에 속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만 소방책임을 지고, 지역주민에 대한 소방책임은 1차적으로 시 또는 주민에 가장 가까운 행정단위에 있고 소방대를 설치 운영할 능력(재정)이 부족한 시의 구역에 있어서는 의용소방대가 소방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의용소방대의 운영은 지역여건과 소방환경을 고려하여 의용소방대가 소

방업무를 주도하는 지역과 이들이 지역사회의 소방안전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행정, 운전 등 일부인원을 전문 소방인력으로 배치하는 지역이 있다.

또한 주간에는 직업소방대원이 근무하고 야간에는 의용소방대원이 근무하게 하는 곳도 있으며, 중·소도시에는 소방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정된 날짜에 정해진 시간동안 주기적으로 소방관서에서 근무하면서 업무를 보조해 주고 있다.

이들의 소방자원 봉사활동은 철저히 지역사회봉사를 목적으로 하여 자신의 봉사를 통한 보람을 찾는데 있고 다소의 의무감마저 있는 것이어서 그 대가를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기 어렵다. 반면, 대도시는 건축물 등 소방 환경이 복잡하고 사람들의 생활양상이 다양해서 자원봉사 제도는 소방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아 전문소방요원들이 전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용소방대 활용방법은 전적으로 지역공동체의 선택에 좌우되며 활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는,

- ① 지역공동체의 재원
- ② 의용소방대의 활용 가능성
- ③ 화재발생의 빈도
- ④ 지역공동체의 선호 유형 등이 있다.

미국의 일반적인 소방부문 운영방법으로 가장 작은 지역공동체 내에 의용소방대가 소방대기 소 관리인과 몇 명의 직업소방관을 두고 인건비, 피복비, 기타 보상을 받지 아니하고 이웃이 이웃을 돋는다는 순수한 차원에서 운영된다. 완전히 봉급을 받는 사람들에 의한 최소한의 인사 관리와 더불어 지역공동체를 위한 무료노동을 대신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추가세금이 포함될 수도 있다.

여러 주정부가 방호법(protective legislation)을 법제화하고, 주 전역에 훈련프로그램, 시설 및 벽촌설비를 제공함으로써 그들 의용소방대원에 의하여 조성된 기부금을 인정하였다.

의용소방대원들(volunteer fire companies)은 경보시 최소한 4명으로 대응해야 하며, 소방행정관들은 소방대원들이 충분한 활동을 결정하기 위한 대응기록이 언제나 적합한 방식의 대응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가를 재조사 하여야 한다. 또한 소방행정관들은 필요한 지역에 수시 신규대원을 모집하고, 요구되는 최소한의 대응을 제공할 요원들에게 부수적인 훈련을 실시해야만 한다.

잘 조직된 의용소방대 내의 모든 필수요원의 직위는 배치된 의용소방대원들에 의하여 전담되나 직업소방관의 화재예방, 훈련과 통신기능 등 많은 관할권에 있어서는 카운티정부 혹은 정

부의 다른 기구에 의하여 제공되고 있다. 지역공동체가 직업소방관을 두는 여유가 있는 지역은 경보에 대응하는 것이 보다 빠르고 효율성이 증대된다. 정규소방관이 소방장비를 겸비하여 화재현장으로 출동할 때 유무선통신을 통하여 경보신호를 받은 의용소방대원들은 화재현장으로 직접 출동하게 된다.

소방장비조작요원은 정상적으로 소방대기소와 장비를 관리하고 있으며 의용소방대원이 직접 화재진압활동에 임하게 되므로 정규소방관은 비록 진압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아주 적다는 것이다.

지역공동체의 주요 화재방어요원 자격으로서의 소방지휘관은 증가하는 법적·기술적 책임을 갖춘 자격과 경험을 토대로 임명하고 있다. 또한 지역공동체들은 최소한의 요구만큼 NFPA 표준에 의거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고 있다.

의용소방대는 그 대(隊) 자체 단독으로 혹은 직업소방관서와 연합하여 지역내의 소방활동과 긴급재난사고 대응 및 수습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다수의 지역공동체가 의용소방대를 필요로 할지라도 합리적비용, 정치적 풍토, 지역의 성장과 소방부문의 변천, 기타 방화정책 등에 따라 설치·운영의 규모와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의용소방대원과 유급상비대원의 사용은 경제적 자유와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 통속적이다.

순수한 의용소방대와 연합소방관서의 장은 조직운영 관계법규적용 등 소방행정을 총괄하는 필수지식과 훈련에 능통해야하고 다른 소방관서장, 유관기관단체장, 전문조직, 국제소방관서장 협회(IABC), 국가방화협회(NFPA), 전국의용소방대평의회(NVFC), 적십자사(Red Cross) 혹은 경찰보조단체(police auxiliaries)와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직업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들은 지역 내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을 위한 전문소방교육훈련을 주기적으로 받는다. 화재진압에 중점을 둔 이 소방교육 훈련은 그 형태와 양 및 질의 바람직한 지표를 설정해 놓고 실시하고 있다.

거의 모든 주정부의 소방관서 관리프로그램에 대한 기초 화재진압 범위내에서 실시되는 이 훈련은 대도시와 카운티 소방관서의 경우 보통 자체훈련시설과 정규훈련 교관을 보유하고 전문적·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신규 모집한 소방대원들은 그들이 정식임무를 받기 전 적어도 2~3개월 동안 전문소방훈련을 받고 있다.

대다수 주정부의 소방훈련 프로그램은 주의 종합대학교 또는 단과대학의 후원하에 주정부내의 교육기관(보통 직업교육)의 주도로 운영되고 있다. 소방훈련지도관은 어떤 경우에 주정부 소방본부 등의 통제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어떤 주정부의 소방훈련 지도관은 정규직 교관이 아닌 경우도 있다.

이런 체제하에 직업소방관과 유급상비대원 혹은 의용소방대원들은 유사시를 대비하여 연초에 수립된 종합교육훈련계획에 의거 화재진압훈련, 위험물질, 대응훈련, 응급의료서비스(EMS) 훈련, 응급의료전문가(EMT)훈련, 구조훈련, 특수사고대비 훈련 등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평가도 한다.

순수 의용소방대를 포함한 각급 소방관서 일선 소방대기소(파출소)별로 화재진압을 위한 임무별 단위조직을 기관반·사다리반, 구조반, 특수장비반 등으로 구분하고 평소 각 단위조직별로 세부 임무를 부여해 놓고 있다. 이들은 효과적인 소방통신체계는 소방관서의 운영에 달려있다고 보고 911긴급전화 수보와 상황의 신속전파 및 비상소집, 유무선통신의 교신 등 통신업무 수행에도 세심한 주의력을 기울이고 있다.

4 일본 의용소방대

1888년 소방본부 및 소방서가 설치되었으나 전국적으로 공설소방조직은 적었으며 대부분 사설소방조직이었다.

1896년 내무성이 소방규칙을 공포하고 소방조의 조직 및 운영의 기준을 정하고 이것을 부·현지사의 관장으로 두었고, 1939년 경방단령 20호로 소방조는 경방단으로 개조되어 경방단은 지방장관의 직권 또는 시·정·촌장의 신청에 의하여 경방단을 설치하고 단장, 부단장, 부장, 반장 및 경방원으로 구성하여 경방단에 관한 비용은 시·정·촌이 부담하게 되었다.

1947년 소방조직법 제정 및 소방단령이 공포되어 전국 시·정·촌에 자주적 민주적 소방단이 조직되었으며, 소방단은 주로 화재의 경계 및 진압, 기타 재해의 방재 및 피해의 경감 등 소방 활동에 종사하는 시·정·촌의 공적기관이다.

소방단은 향토애호정신에 의해 민간유지들에 의하여 조직되어 있는 시·정·촌의 공적기관이며 그 구성원인 소방단원은 평상시에 각자의 직업에 종사하면서 필요에 따라 소집되어 소방활동에 종사하며 소방단원에는 비상근과 상근단원이 있으나 소방단 상비부에 속하는 단원은 상근으로 되는 것이 보통이다.

소방단의 설치, 명령 및 구역은 조례로 정하며 소방단장은 비상근이고 소방단의 추천에 의해 시·정·촌장이 임명하고 단원은 단장이 시·정·촌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된다.

일본 의용소방대 운영의 특징은 법 체계면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의 전통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조직과 운영이 영·미 국가에 비해 수직적이고 획일적인 면이 강하다.

5 프랑스 의용소방대

역사적인 이유로 파리와 마르세이유에는 군사조직하의 소방대가 구성되어 있어 프랑스에서는 소방관으로 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이유로 인한 군사조직의 소방업무관여는 소방의 계급을 군사계급과 동일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프랑스 전체 소방력의 90%에 육박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의용소방대는 중소도시에서는 직업소방관들과 같은 소방서에서 근무하며 주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외곽지의 작은 마을에서는 의용소방대만으로 이루어진 소방서가 운영되고 있다.

모든 소방관들은 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있는데, 그중 의용소방대원의 선발요건은 다음과 같다.

- 16세 이상의 건전한 시민일 것
- 신체검사에 합격할 것
- 5년 이상 근무할 것(정년 55세)
- 모든 구조활동을 위한 필수적 훈련을 이수할 것

6 이탈리아 의용소방대

93개의 지방소방서와 290개의 작은 소방서에 26,000여명의 직업소방관이 근무하고 있고 북부 지방에 200여개의 의용소방서에 3,500여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의용소방대원과 소방공무원들이 함께 근무하는 소방서가 없는데, 그 이유는 예전에 실시를 했을 때 안 좋은 일로 소방서가 해체되었던 부정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성소방관이 생긴 것은 최근의 일로 직업소방관은 2명이고 의용소방관은 11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 직업소방관(vigili permanenti) : 정부에 의해 고용된 사람으로 일반적인 구조업무에 종사
- 의용소방관(vigili volontari) : 자신들의 직업을 가지고 있고 사고 발생시에만 출동하는 민간인
- 군역 보조 소방관(vigili ausiliari di leva) : 우리나라의 공익근무요원과 비슷한 개념으로 군 역을 소방관으로 대신하는 사람들
- 비연속성 소방관(vigili discontinui) : 소방관 생활을 했던 주민중에 국가 대재난사태나 지방 소방서의 특별한 필요에 응하여 소집되는 사람들

7 칠레 의용소방대

칠레에는 의용소방대원만이 있고 직업소방관은 없다. 1851년부터 북부지방에서는 광산사업 등에 연계되어 있던 귀족들에 의해 창설되기 시작하였고 남부지방에서는 독일인들에 의해 소방조직이 창설되었다. 소방대는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존경을 받았고 19세기까지는 자율적인 사조직으로 운영되었다. 1970년에 들어서는 산업화에 따른 소방수요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소방연합회가 창설되어 장비를 개선하고 대원들의 훈련을 담당하는 등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칠레에는 모두 275개의 의용소방대가 있으며 이들은 1개 이상의 구역을 담당하고 있다. 소방대는 자체관할구역(행정구역과 동일)을 갖고 장비와 대원들을 관리한다. 중요도시에는 구조, 위험물사고 등과 같은 특수분야 응급사고에 전문화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정부에서는 국가예산법에 따라 소방대를 지원하고 있고, 지방정부에서는 특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대에는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게다가 대개 지역주민들은 소방대를 지원하기 위해 모금 운동을 한다. 칠레의 의용소방대는 거의 모든 사고와 응급상황에 출동을 하지만, 국가보건업무에 관련된 응급상황에는 출동하지 않는다.

8 대만 의용소방대

대만 소방법상에는 제5장의 민력운용에서 의용소방대의 설치와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용소방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내용은 우리나라의 시·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

9 리히텐슈타인 의용소방대

약 670여명의 의용소방대원만이 소방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지방정부 소속공무원으로 3개의 법률이 소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의용소방대는 클럽형태로 운영되며 시장이나 다른 후원자들로부터 경비를 지원받고 있다. 시의 예산이 없는 경우는 “Verein”이라는 비정부기구에 의해 경비를 지원받고 있다. 매년 정부에서는 650만 스위스프랑을 지원한다.

10 국제기구

FWVFA(Federal Worldwide Volunteer Firefighters Association) : 세계의용소방대연합회가 있는데 회원국이 130여개국에 이르고 본부가 일본 도쿄에 있다.